

긴급토론회: 교수의 인권마저 유린되는 현실을 염려한다.

안기부의 기관 구속과 대처

- 일 시 : 1994년 10월 19일(수) 오후 5시-7시
- 장 소 : 서초동 변호사 회관 5층 대회의실

- 주최 : 기독자교수협의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KNCC)
한국여성단체연합

긴급토론회: 교수의 인권마저 유린되는 현실을 염려한다.

• 사 회 : 강명구 교수(서울대, 신문학)

• 경위보고 : 정현백 교수(성균관대, 사학)

• 주제발표 :

발제 1. 안기부의 긴급구속과 인권

박세경(해마루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발제 2. 왜곡된 언론보도와 인권

- 안기부의 시민연행사건에 대한 보도태도

김남석(경남대, 신문방송학)

발제 3. 교수의 인권과 시민의 인권

강경선(방송대, 법학)

참여연대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94. 10. 10	B14	1

• 토 론 :

김경남 (KNCC, 사회인권국 사무국장)

김성재 (기독자교수협의회, 한신대, 기독교육학)

남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연 사무국장)

이은영 (학술단체협의회, 한국외국어대, 법학)

• 주 죄 : 기독자교수협의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KNCC)

한국여성단체연합

안기부의 긴급구속과 인권

박 세 경(해마루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1. 들어가는 말

본 사건과 같이 안기부의 긴급구속이 인권침해를 가져온 사실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 있다.

즉 그 하나는 문제의 쟁점이 왜 '안기부'냐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상의 '긴급구속' 제도 자체의 문제점인 것이다.
이하 차례로 살펴본다.

2. 안기부의 직무와 관련하여

가. 국가안전기획부법 제3조 제1항은 안기부의 직무와 관련하여 "1.국외정보 및 국내안보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2.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안보업무 3.형법 및 내란의 죄,외환의 죄,군형법상 반란의 죄,암호부정사용죄,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다만,제7조,제10조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에 대한 수사. 4.안전기획부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정보 및 안전업무의 기획,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위 법 제3조 제1항은 1993.12.제165회 국회에서의 법 개정으로 종전보다 다소 그 직무의 범위가 축소된 것임. 그 주요내용은 제3조 제3호의 안기부의 수사권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 등),제10조(불고지죄)의 수사권이 제외된 것임.

또한 위 법 제 16조는 "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부장이 지명하는 자는 이 법 제3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적어도 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범죄에 관해서는 안기부가 수사권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과 같이 안기부의 직무범위는 크게 보아 정보 및 기밀보안업무와 수사권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남용하여 안기부(그 전신인 중앙정보부를 포함하여)는 그 동안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한 국가중요정책결정의 방향제시라는 본래

의 목적을 떠나 국내정치에 개입함으로써 각종 불법을 자행하였고, 특히 그 수사권을 남용하여-안기부 조직과 활동의 비공개성과 결합하여- 민주세력에 대한 불법체포·감금·고문등의 인권유린행위를 자행하여 왔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소위 문민정부 수립 이후 위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안기부법의 개정 및 직무범위의 축소 등이 본격적으로 거론되었으며 본 사건과 관련시켜 보자면 개정안의 가장 큰 쟁점중의 하나가 안기부의 '수사권' 폐지 문제였다.

즉 안기부의 기능을 순수한 정보기관, 그 중에서도 국내정치개입에 남용될 여지가 없는 국외정보수집분석기관으로 국한시키고 대북정보를 포함한 국내정보 수집분석 기능 및 수사권은 이를 분리하자는 것이었다.

이에따라 민주당에서도 1993.12. 국가안전기획부의 명칭을 국가정보처로 바꾸고 그 직무범위에서 수사권을 폐지하는 등의 안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처법'안을 제안한 바 있었으며 민자당과 수차례 교섭끝에 현재의 법률로 개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개정 '국가안기부법'은 종전 국가안기부법에 비하여 그 직무범위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간 축소되고 직권남용죄, 정치관여죄등이 새로이 신설되었으며 수사시적법절차의 준수조항 등이 보완되는 등 종전 법률에 비하여 진일보한 것이기는 하나 그 틀은 마찬가지이고 실효성 역시 의문이다.

다. 무엇보다도 안기부는 그 조직, 구성, 활동내용이 비공개, 비밀주의가 원칙이어서 공개주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향하는 소송(재판)구조, 그 전단계로서의 수사원칙과 결부되기 어렵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검찰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통제와 같은 통제를 기대할 수 없고, 안기부 전담 수사에 있어서 검찰은 거의 개입하지 못하고서 나중에 안기부 수사 내용을 발췌·정리하여 공소장만을 대서하는 기능에 안존하여 온 것이 역사적 현실이 아닌가?

이러한 상황에서 안기부가 인신구속을 수반하는 수사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불법체포, 감금, 고문 등 인권유린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이다.

한편, 국내의 수많은 수사기관을 제쳐두고 안기부가 수사업무를 담당할 어떤 국가적, 현실적 이유도 전혀 없다.

3. 소위 긴급구속장 제도의 문제점과 인권

가. 현행 인신구속은 사전 구속영장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후 구속영장에 의하는 경우는 첫째 현행법 (준현행법 포함)의 경우와 긴급구속의 경우(영장주의의 예외) 2가지가 있다.

그 이외의 모든 인신구속은 불법이다.

나. 현재 인신구속의 실태

(1) 현행법(준현행법 포함)의 경우에는 인신을 먼저 체포하고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고 있다.

(2) 현행법 이외의 대부분의 인신구속도 대부분은 일단 영장없이 수사기관에 연행한 뒤 향의사실에 대하여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을 집행하여 온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

수사기관은 이 과정에서 구속전 연행상태를 '임의동행'이라고 강변하여 왔지만 이는 명백히 불법구금이다.

구속영장의 발부양태도 영장없이 체포되고 사후에 영장이 발부됨에도 불구하고 발부되는 구속영장은 '사전 구속영장이다'

이러한 구속양태가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이었음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3) 긴급구속

(1) 형사소송법 제206조는 제1항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고하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법경찰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단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즉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소위 긴급구속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제207조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구속한 경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48시간 또는 72시간 이내에 판사로부터 사후 구속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있으며 사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할 경우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하고 있다.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제3호 : 피고인이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2) 위와 같은 긴급구속은 구속필요의 긴급성에 대처함으로써 수사의 합목적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사전영장주의의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중대범죄를 범한 범인을 놓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고, 현행 현법 제12조 제3항 단서에서 "다만, 현행 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근거를 두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긴급구속제도는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예외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

하여야 한다.
즉 범죄의 중대성, 범죄의 객관적 혐의, 긴급성, 구속의 필요성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만일 그러지 못하면 불법구속이 될 것이다.

(3) 실무에 있어서도 거의 최근에 이르기까지 위 긴급구속제도는 거의 사문화된 상태였다.

그러다가 93.경에 이르러서 위 긴급구속이 갑자기 활성화 되어 경찰, 검찰에 남발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최근까지의 관행이었던 임의동행이 여론으로부터 집중적인 비난을 받고 사법부로부터 불법이라는 판단을 받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용된 듯하다.

한편, 긴급구속의 경우 흔히 '긴급구속장'이라는 것을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발부하고 구속집행 수사기관이 이것을 피의자에게 제시하는데 이 '긴급구속장'이라는 것은 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고 단지 검찰내규,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등에 있는 것으로 검찰이나 사법경찰 내부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구속에 법적 권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발부되는 내부문건에 불과한 것이다.

(4) 이상과 같은 긴급구속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문제점은 긴급구속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긴급구속이 남발하여 인신구속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러한 경우 피의자의 침해된 인권은 보장받을 길이 없으며 더욱이 긴급구속에 있어서는 법원의 사후심사의 길도 판사가 사후영장의 청구를 받았을 때 긴급구속의 요건이 충족되었는가를 심사한다고는 하지만 그 실효성이 의문이며 이 사건과 같이 긴급구속 이후 검사가 아예 구속영장 자체를 청구하지 않고서 석방한 경우는 사후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없다는데에 있다.

즉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긴급구속은 긴급구속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현재의 불법적인 관행인 임의동행 수사에 적법성만 부여하고 있는 꼴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활성화한 긴급구속도 진짜 위급한 상황에서의 긴급구속은 여전히 구속영장없이 종전 관행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긴급구속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사건(특히 시국사건)을 긴급구속이란 이름하에 수사기관의 수사필요에 따라 48시간 정도 법원의 통제없이 구속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락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긴급구속은 검사의 판단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사법경찰관의 판단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 바, 이창복, 황인성씨의 경우도 사법경찰관이 발부한 긴급구속장에 의하여 양인이 구속되었다 것이다.

사법경찰관이 긴급구속을 한 경우 사후에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제도가 얼마나 쉽게 남용될 수 있는지 알 것이다.

사법경찰리는 원래 긴급구속의 권한은 없지만 사법경찰관의 지시를 받은 경우에 긴급구속의 권한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여서 사실상 모든 수사기관이 아무런 법

적 통제장치(예컨대 법원의 심사 등)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긴급구속할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1) 이상과 같이 긴급구속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그 현실적인 운용 역시 악용, 남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위 제도도 나름대로의 존재이유를 가지고 있는 만큼 폐지한다고만 하여 능사는 아니다.(예컨데 살인등의 중죄를 범하고 수배, 도피중인 자의 구속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는 어떻게 긴급구속의 남용을 막고, 그 사후심사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2) 수사기관이 명백히 긴급구속의 요건을 위반하여 긴급구속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형법이나 특별법으로 규제함으로써 간접강제하는 방법.

(3) 긴급구속시 영장청구기간을 현행의 48시간 또는 72시간에서 48시간 혹은 24시간으로 줄이고 법관에 의한 필요적 영장실질심사제(피의자신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4) 참고로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현행 제206조 긴급구속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단지 제200조의 2를 신설하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하고, 48시간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즉시 석방"하도록 하여 체포영장제를 도입하고 있고, 제201조의 2에서 "체포,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구속영장 청구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피의자를 심문후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하여 구속전 피의자 신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바,

체포영장제도의 실시를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즉 구속영장의 요건보다 훨씬 완화한 것임) 도리어 수사기관의 편의대로 구속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을 넓혀 놓은 감이 있고, 긴급구속에 있어서도 필요적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영장실질심사제를 도입함으로써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안기부의 시민연행사건에 대한 보도태도

김 남 석(경남대, 신문학방송학)

1. 보도내용의 개요

(1) 제목

<10월 7일 (금)>

한겨레신문 1면 : 교수2명 안기부연행

동아일보 1면: 親北활동 혐의 教授2명 연행조사

조선일보 1면: 교수3명 연행조사

한국일보: 北자금 받은혐의
두教授 연행조사

중앙일보 사설: 「붉은 장학금」 경계해야

<10월 8일 (토)>

한겨레신문 15면: 특하면 “긴급구속”

부부유학생 자수
4차례 걸쳐 입북

동아일보 1면: 獨유학 부부간첩 자수

조선일보 1면: 獨유학 夫婦간첩 자수

한국일보 1면: 獨유학 夫婦간첩 자수

경향신문 23면: 獨유학 夫婦간첩 자수

서울신문: 獨유학 夫婦간첩 자수

조선일보 5면 해설: 獨거점 北공작실체 드러나

한국일보사설: 사실로 드러난 장학금間諜

한국일보 29면 해설: 北 개방화 편승 「우회침투」 확인

<10월 9일(일)>

한겨레신문 사설: 국가안전기획부, 아직도 멀었다

<10월 10일(월)>

한겨레신문 19면 정현백교수 인터뷰: 안기부 악몽보다
언론보도에 오싹

(2) 내용

<10월 7일 뉴스보도>

한겨레신문

- * 정현백, 김홍진, 이태훈씨 연행사실 - 전문
- * 정현백, 김홍진 연행조사 - 안기부 발표인용
- * 이태훈 및 이태훈 부인 연행 또는 조사사실 - 자체 정보원
- * 추가내사방침 - 알려졌다 정보원
- * 정현백교수 조사내용 - 안기부 정보원
- * 안기부 연행목적 - 안기부 발표인용
- * 정교수, 김홍진교수, 이태훈씨 인적사항 - 자체 정보원

동아일보

- * 정모, 김모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조사 - 안기부 정보원
- * 조사내용 및 혐의사실없으며 귀가조치예정 - 안기부 정보원
- * 성대총장 예의 주시 발언 - 직접 인터뷰

조선일보

- * 정현백, 김홍진, 윤여덕, 이태훈씨 등 6명 긴급구속, 조사중 - 안기부 정보원
- * 연행시기 및 장소 - 알려졌다 정보원
- * 박홍씨의 북한장학금 관련발언이후 내사활동 전개 - 한소식통 정보원
- * 해외간첩단과의 연계여부확인수사 - 안기부 정보원
- * 정교수 인적사항 - 자체 정보원

한국일보

- * 김홍진, 정현백 교수 조사중 - 안기부 정보원
- * 현재 그외의 친북조직연계도 내사중 - 안기부 정보원
- * 연행장소, 시기 - 자체 정보원
- * 박홍총장발언 관련 내사중 - 알려졌다 정보원
- * 김교수, 정교수 인적사항 - 자체 정보원

<10월 8일 뉴스보도>

한겨레신문

- * 부부자수 및 불구속 입건 방침 - 안기부 정보원
- * 부부협의사실 - 안기부 정보원
- * 안기부 내사사실 - 안기부 정보원
- * 이상우, 안윤정씨 구속 - 자체 정보원
- * 이상우씨 협의사실 - 안기부 정보원

동아일보

- * 한병훈, 박소형 부부 자수, 간첩조직 수사중 - 안기부 정보원
- * 부부의 포섭경위 및 활동사항 - 안기부 정보원
- * 안윤정, 이상우씨 구속사실 - 자체 정보원
- * 4인 귀가조치 - 안기부 정보원

조선일보

- * 부부자수 - 안기부 정보원
- * 부부 포섭경위 및 활동 - 안기부 정보원
- * 기소유예방침 - 안기부 정보원
- * 4인귀가조치 - 안기부 정보원
- * 정교수등 반발 - 자체 정보원
- * 안윤정, 이상우씨 구속 - 자체 정보원

한국일보

- * 부부진술에 따른 2인 구속 - 자체 정보원
- * 이상우씨의 포섭경위 및 활동사항 - 안기부 정보원
- * 부부 포섭경위 및 인적사항 - 안기부 정보원(확인사항 보도형태)
- * 4인귀가조치 - 안기부 정보원

경향신문

- * 부부조사증 - 안기부 정보원
- * 자수경위 - 안기부 정보원
- * 안윤정, 이상우씨 구속 - 자체 정보원
- * 4인 귀가조치 - 자체 정보원

- * 부부 포섭경위 및 활동사항 - 안기부 정보원
- * 진술에 따른 6인 긴급구속 조사 - 자체 정보원
- * 이상우, 안윤정씨 구속사유 - 자체 정보원

서울신문

- * 부부자수에 따른 간첩단 수사 - 안기부 정보원

* 부부의 협의사실 - 자체 정보원

- * 이상우, 안윤정씨 구속 및 구속사유 - 자체 정보원
- * 안기부 내사사실 - 자체 정보원
- * 부부 포섭경위 및 활동사항 - 자체 정보원
- * 자수경위 - 알려졌다 정보원
- * 4인 귀가조치 - 안기부 정보원

<사설>

중앙일보(10월 7일)

- * 독일거점 북한공작조직이 밝혀졌다.
- * 박홍총장증언이 현실이 아닌가 섬뜩하다.
- * 다행히 3명교수들은 연계혐의가 없다니 다행스럽다.
- * 대남공작이 이럴진대 진보적 교수들의 안이한 대북자세도 심각한 문제다
- * 또 어느 교수가 연루될지 불안하다.
- * 대남공작이 공공연한데 지식인간첩단사건이라면 조작가능성부터 생각하는 피해의식을 버려야 한다.
- * 김일성장학금을 직접받은 것이 아니라도 결과적으로 북을 찬양하고 북을 따르는 친북지식인이 늘어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한국일보(10월 8일)

- * 북의 공작지도원과 접촉한 유학생·교수들이 10여명이라는 뉴스는 충격적이다.
- * 우리사회의 최고지성에 까지 북의 공작이 빼쳤다.
- * 동백림사건의 예를 보라.
- * 그들은 지난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갔으나 이번에는 어이가 없다.
- * 공산체제가 무너지는데도 암잡이 노릇을 하는 것은 조국과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 * 박홍총장의 「장학금」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 * 북은 공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 * 그래서 포섭에 열중하고 있다.
- * 정부는 대공태세를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 * 북한이 유학생, 교수, 의사 등을 통한 우회침투에 새삼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해설기사>

조선일보(10월 8일)

- * 자수에 따라 북한 공작활동의 실체 드러났다.
- * 안기부관계자는 - 우회침투, 공작수법 - 말했다.
- * 안기부는 - 부부포섭경위, 김용무 인적사항, 부부활동사항, 자수경위 - 밝혔다.
- * 이번수사에 강압적 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 정현백교수 인용

한국일보(10월 8일)

- * 독일거점 북한공작조기 연계 간첩사건은 우회전략 확인 사건이다.
- * 공작활동 전개사실 드러났다.
- * 안기부 수사결과 - 공작지도원, 김용무 인적사항 - 밝혀졌다.
- * 안기부 관계자는 - 부부의 진술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 고 밝혔다.
- * 문제는 북한의 지원을 받아 공부, 귀국한 뒤 국내에서 간첩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다.
- * 안기부는 - 교수 등 국내인사 내사 중 자수하여 수사착수 - 밝혔다.
- * 그러나 연계점 발견못해 수사종결했다. 축소됐다.
- * 무리한 수사였다는 인상 셋기 어렵다.
- * 정현백교수 인용

2. 보도분석

(1) 주요주장

<10월 7일 뉴스보도>

제 1 주장: “교수가 친북활동 혐의로 안기부에 연행되어 조사받고 있다.”

- 부수 주장들: ① “계속 다른 인사들도 내사할 것이다.”
② “박홍총장발언과 관련있다.”
③ “정교수는 어떤 사람이다.”
④ “김교수는 어떤 사람이다.”

<10월 8일 뉴스보도>

가짜 제 1 주장: “독일유학했던 부부간첩이 자수했다.”

- 진짜 제 1 주장: “안기부가 ---라고 발표했다.”
끼워넣기 주장: “4인은 귀가조치시켰는데 반발이 있다.”

<사설>

“박홍총장발언을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

“교수를 비롯한 지식인들의 친북행위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

<해설기사>

제 1 주장: “북의 우회침투 공작활동이 드러났다.”

부수 주장: “안기부가 ---라고 발표했다.”

끼워넣기 주장: “강압적인 수사는 비판이 있다. 정현백교수는 ---라고 말한다.”

(2) 뉴스가치의 기준

10월 7일 뉴스보도의 경우

- 교수 흥미 : 아이고, 교수가 간첩사건으로 안기부에 잡혀갔네!
- 사회적 중요도: ① 교수신분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일로 안기부에 연행되었을까?
② 왜 긴급구속을 했을까?
③ 어떤 경위로 조사대상이 되었을까?
- * 그러나 사회적 중요도의 기준에 해당되는 기사가 불비한 것을 보면 흥미를 기준으로 하여 채택된 기사란 것이 분명하다.

10월 8일 뉴스보도의 경우

- 간첩 — 사회적 중요도 : ① 무슨 간첩사건인가?
② 이번 간첩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③ 안기부가 간첩사건을 발표했구나.

부부 — 흥미 : 어 부부네!

- * 그런데 보도내용을 보면 ‘6인이 조사받다 2인이 구속되고 4인은 귀가조치되었다’는 사실 외에는 안기부의 발표에 의존하고 있으며 직접확인한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뉴스가 치를 충족시키는 측면은 “안기부가 ---라고 발표했다”는 것과 “부부라고 하더라” 밖에 없다.

3. 언론 보도관행의 문제점

① 흥미위주 보도: 하급지의 선정주의 채용

- * 한국에는 여론지 지향적인 고급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관급보도 의존, 존중: 안기부의 기사거리 홀리기에 무책임한 즉각 반응
* 이번 보도의 경우 뉴스의 정보원은 안기부 하나에 불과하다.

③ 사건사실 확인 미비: 전체 사건의 개요를 확인하고 보도하는데 인색

- * 7일자 보도와 관련하여 확인해야 될 사항을 한겨레신문의 보도를 참조하여 보자면 다음과 같다.

- 1) 안기부의 누구가 밝혔나? 공식적인가, 비공식적인가?
- 2) 왜 수사도중에 밝혔나? 그 이유는 대답하던가? 더군다나 조사중이어서 내용을 밝힐 단계가 아닌데 왜 긴급구속사실은 밝혔나? 안기부가 발표한게 아니라면 어떻게 구속

사실을 알고 안기부를 접촉하게 되었나?

3) 더 조사할 사람들은 누구인가?

* 그리고 8일자 보도와 관련하여 정확하게 사건을 구성하기 위해 당연히 「연행사건」의 당사자들에 대한 취재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 한편 정보원을 밝히는 것을 공공연히 무시한다.

④ 보도구성의 편파성: 보도내용 중 입증되지 않은 사실, 관련성이 없는 사실, 서로 다른 뉴스를 구성하는 사실들을 혼재시켜 사건전체와 사건관련 당사자들에 대해 오해를 불어 일어킨다.

예> 1) 교수연행 대 박홍총장발언(입증되지 않은 사실)

2) 교수연행 대 개인교수 인적사항(관련없는 사실)

3) 부부간첩 자수 대 4인귀가조치(서로 다른 뉴스)

4) 부부간첩 자수 대 구속에 대한 반발(서로 다른 뉴스)

5) 공작활동 실체 드러났다 대 무리한 수사 지적(서로 다른 뉴스)

⑤ 후속보도에 인색: 앞서 보도의 편파성과도 관련된 것으로서 사건의 반전이 있었을 때 그것을 보도하는 태도가 되어 있지 않다.

4. 언론보도에 대한 시민의 대응

언론보도에 대해 시민들이 대응하는 방법은 몇가지 있을 수 있다. 위낙 언론이 한국사회에서는 일반시민들에 대해 또 하나의 권력체로 군림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적 대응은 곧잘 무너지고 말지만 그래도 언론을 견제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은 시민들의 단합된 대응에서만 나온다.

첫째) 언론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한국의 대부분의 언론은 선정주의적 보도를 일삼는 저급지적 경향이 있다.

한국의 대부분의 언론은 시민적 권리(모호하고 쉽게 정의되지 않는)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

저급한 대중언론으로서 민주주의의 기초인 시민적 권리에 대해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 언론은 사회의 여론을 선도하는 여론지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불구하고 한국의 시민들은 언론의 역할을 필요이상으로 과장되게 판단하고 그 언론의 판단에 의존하여 사회와 개인을 재단하려 한다.

심지어 대학에서도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 문제다.

둘째) 불매운동을 해야한다. 소비자운동이 최고다.

셋째) 사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에 제소해야 한다.

넷째) 언론이 국가기관에 대한 또는 의한 정보를 배타적으로 수집, 배포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

나의 권익을 찾는다.

지식인을 포함해서도 일방적

국가 이익은 정교히 해석을 요구

이반인과 지식인들

교수의 인권과 시민의 인권

강경선(방송대, 법학)

1. 머리말

모든 국민들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받는다.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의 이념과 개별적인 조항들은 하나의 완벽한 기본권체계를 이루고자 한다. 다시 말해 개별적 기본권과 기본권 전체와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개인차원에서 보면 인격의 온전한 발현을 뜻하며, 사회차원에서 보면 완전한 자유와 민주사회 실현을 뜻하는 헌법상의 기본권들은 그래서 그 어떤 하나도 누락됨이 없이 완벽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유도 이해되어야 한다. 이 자유가 단지 학문연구자들과 대학에 몸담고 있는 교수들과 학생들만의 자유권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이들 자유가 어떻게 얼마만큼 보장되느냐 여부가 우리나라와 국민들의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수준을 결정짓는 것이고, 따라서 이와 연관되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제권리들의 수준결정에도 파급효과를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대학에 대한 공권력의 남용임이 명백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성적인 문화발전을 가로막고 대학에 대한 간섭과 침해를 일삼았던 과거의 군사정권을 그렇다손치더라도 문민정부가 들어서서도 여전히 예전의 작태가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는 것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 다른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아하에서는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와 특히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뒤틀릴대로 뒤틀려버린 우리 대학사회가 회복해야 할 자신의 권리와 책임이 무엇인가를 다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2. 학문의 자유

(1) 의의

헌법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학문이라 함은 자연과 사회의 변화나 발전에 관한 법칙 또는 진리를 탐구하고 인식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분

류될 수 있는 학문의 자유(academic freedom)는 학문적 활동에 관하여 국가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를 일차적으로 가진다.

(2) 법적 성격

연혁적으로 살펴볼 때 학문의 자유는 기본적으로는 공권력의 침해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소극적 방어권으로서의 성격을 띤다. 하지만 모든 고전적 자유권이라 할지라도 현대에 와서는 현대적 기본권들과 총체적 관계를 분유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학문의 자유에서도 가급적 사회권적 기본권이 가지는 적극적 성격을 찾아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학문의 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에 관한 지원이나 급부를 국가 또는 사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때만이 그 규모면에서 거대하고 시간적으로 급변하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학문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겠기 때문이다.

(3) 학문의 자유의 내용

가) 연구의 자유

연구의 자유는 성격상 신앙이나 양심의 자유에 준하므로 유보없이 보장되는 자유로 이해된다. 학문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헌법 제37조가 말하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라도 이 부분이 침해되면 학문의 자유는 파괴되는 것이다.

나) 연구결과 발표의 자유

연구의 자유는 그 외연상 연구결과를 외부에 공표할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연구결과의 발표는 대학의 강의실 이외의 집회에서 발표하거나 학술지에 또는 저서로써 발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통해서 한 연구자의 생각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그 비판과 검토과정을 거쳐가면서 그 나라와 사회의 문화수준결정에 기여한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 보장이 당연히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어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연구결과도 외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다) 강학의 자유

강학의 자유는 연구결과를 대학의 강의실에서 전달하는 자유이다. 이를 '교수의 자유'(Lehrfreiheit)라고 부른다. 교수의 자유는 위에서 말한 '수업의 자유'와 구별하고 있다.

강학의 자유는 특히 강학의 내용이나 방법론 또는 학술적 견해의 표명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수는 강학내용이나 강학방법에 관한 한 누구의 지시나 감독에도 다르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강의실에서는 자신의 학문적 견해를 자유로이 표명할 수 있다.

3. 대학의 자율성

(1) 의의

대학의 자율성이라 함은 대학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가능한 한 대학의 자치 내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학문연구의 자유를 보다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행하고 그것을 전파하거나 다음 세대에 계승시키기 위해서는 연구자집단과 학생집단이 잘 관리될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이 바로 대학인 것이고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서 운영하게 하자는 것이 대학의 자치 혹은 자율인 것이다.

자치 내지 자율(autonomy)은 본래 일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자신의 존재방식에 대해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 결정권을 가짐을 뜻한다. 그렇다면 대학의 자율성도 그런 방향에서 이해하면 된다. 그런데 자신의 존재방식에 대한 결정권을 보다 더 자세히 말해서 무엇에 대한 누구의 결정권이냐라는 결정의 주체와 대상이 명확히 될 것을 요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들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추출해낼 것이 필요할 것 같다.

(2) 법적 근거

우리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한다. 이 조문을 자세히 보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모든 교육기관---따라서 대학에도---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대학에서 만큼은 별도로 대학의 자율성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대학의 자율성이 교육의 자주성 일반 보다도 특별히 더 보장될 것을 요구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이 교육자치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로 보장하겠다는 이 규정은 실제로에서는 별로 실효성을 갖고 있지 않다. 우선 교육에 관한 기본법인 교육법이나 기타의 교육관계법을 보더라도 이런 정신이 특별히 반영된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더군다나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교육과 대학에 대한 배려나 의미부여 같은 것이 박약한 형편이다. 이런 교육의 황폐화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민주화운동, 특히 전교조운동이 전개된 사정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전교조를 통하여 기존 교육의 문제점을 전사회에 폭로하고 그 시정을 촉구하는 일대계기를 마련하였지만, 정작으로 법적 차원에서 얻은 변화란 고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1991)과 같은 유명무실한 법제정에 그쳤다.

이렇듯 대학의 자율성 보장은 법률에 의해서는 보장되고 있지 않다. 여기에서 주어야 할 것은, 헌법 제31조 제4항의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규정은 결코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대학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을 통해 보장하되, 대학의 자율성의 핵심적 요소가 되는 제도는 법률에 의해서도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률이 없다고 해서 대학의 자율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학의 자율성은 그대로 보장되는 것이다. 법률에 의한 헌법의 형성이 없더라도 자율성의 구체적 내용은 헌법의 원리로부터 체계적 해석을 통하여 도출되는 것이다.

(3) 내용

그렇다면 대학의 자율성의 내용은 무엇인가? 대학의 자치는 첫째, 대학인사에 관한 자치 내지 자주결정권, 둘째, 대학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자주결정권, 셋째, 대학 학사관리에 관한 자주결정권을 뜻한다. 오랜 동안 이런 본질적인 내용들이 대학의 외부의 결정에 의해서 시달려왔던 것이 우리의 역사이다. 오늘날까지도 이것이 시정되고 있지 않음은 물론이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국가공권력의 외풍에 의해서,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설립재단의 영향력에 의해서 대학의 운영이 좌지우지 되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991년 개정된 현재의 「사립학교법」은 종전에 비해서도 오히려 재단의 대학에 대한 영향력과 개입을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시바삐 개정되어야 할 대표적 악법으로 꼽히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의 자율성에 관련하여 특별한 법률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마당에 대학의 자율성의 보장수준을 어느 정도에서 결정하느냐가 또한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라고 본다. 대학의 자율성일반을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은 벅찬 문제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교수의 지위와 관련한 자율성 논의에만 국한시키기로 하겠다.

(4) 교수의 지위

헌법에서나 교육법을 통하여 일반교원과 구별되는 교수의 지위규정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다만 정당법시행령 제1조 참조). 따라서 교수의 법적 지위는 우선 교원 일반의 지위에서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이다. 교육법 제13조는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적정하게 우대되어야 하며 그 신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가 몰각된 현실이 계속되다 보니까 교육민주화운동이 벌어졌고 이러한 과정에서 임시방편격으로 제정된 법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었다. 이 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제2조 제1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히는 등 곳곳에서 교원의 사회적 권위를 높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야말로 유명무실한 법인 것임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아울든 헌법 제31조 제4항의 취지를 해석하면, 이 법에서 정한 교원지위향상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대학과 교수의 지위가 자율성 확보의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헌법 제31조 제4항의 취지에서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수준일까? 이것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것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신분보장과 국회의원에 관한 특권인정에 관한 내용이다. 법관과 관련해서는 헌법 제105조 제3항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와 제106조 제1항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어느 정도 지침이 될만하다. 물론 교수가 국가기관이 아닌 이상 탄핵규정과 같은 것은 전혀 적용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에 상당하는 교수에 대한 신분보장을 마련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과 같은 대학의 자율성개념을 우선확보해야 한다. 우리 헌법이 문화국가의 원리를 지향하고 동시에 그동안 군부정치로 문화의 영역이 형편없이 폐폐화된 것을 감안한다면 이런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은 너무

정당한 것이라고 하겠다. 물론 현실의 대학과 교수의 형편을 보면 이런 것을 단번에 실현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대학이 처한 역경을 시정시키고자 하는 지원과 협조가 수반되면서 이런 목표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헌법에는 국회의원에 관한 특권으로서 회기중 불체포특권과 발언상의 면책특권이 인정되고 있는데 개념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그런 정도의 특권이 주어짐으로써 교수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곧 이어서 살펴볼 것이다.

(5) 대학의 자율성과 경찰권

도시의 공기가 자유롭다고 하지만, 도시의 공기를 자유롭게 하는 온상은 대학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자유로운 대학의 분위기는 외부의 공권력과 끈질 마찰을 빚어왔다. 그래서 대학의 자율성 보장에는 경찰권과의 관계설정이 그 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

대학의 학문연구와 교육활동이 경찰권력의 영향하에 놓이게 되면, 창조적인 대학으로서의 활동이 제한당할 뿐 아니라 교수와 학생/ 학생상호간의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도 방해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경찰권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꼭 필요하다. 자유롭고 창조적인 연구와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학내에서의 경찰권 행사에 관하여 대학이 자주적인 가택권과 질서유지권 및 징계권을 가져야 한다(권영성, 신관 헌법학원론, 1994, 법문사, 295-296쪽).

이와 관련해서 「교육공무원법」 제48조, 「사립학교법」 제60조,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4조는 똑같이 「교원의 불체포특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교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교원들이 일반 공무원이나 다른 직원에 비해서 가지는 특별한 권리임에 분명하다. 이런 규정이 별다른 이의없이 교육관계법에 남아있다는 것은 바로 교육과 교육자에 대한 일정한 신분보장을 한다는 정신이 아직도 이 사회의 기본상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자율적 보장들이 체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이 명목화되어버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교권존중에 대한 국민들의 기본상식을 기초로 해서 교육과 대학의 자율성의 수준을 높이도록 하여야 하리라고 믿는다.

4. 대학과 교수에 행해진 최근의 공권력남용 사례에 대한 평가

(1) 경상대사건의 경우

가) 이미 4여년 동안 강의교재로 사용되어 오던 교재『한국사회의 이해』를 새삼스럽게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문제삼은 것은 학문(연구와 강학의 자유), 사상, 출판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 이해된다.

나) 더욱기 검찰이 해당강좌를 레포트와 시험답안지까지 수사대상으로 삼은 것은 전후맥락으로 볼 때 학사관리에 관한 자주결정권을 내용으로 포함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다) 이런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한국사회의 이해』강좌를 폐강에 이르게 한 것은 대학의 자율권 침해는 물론 교수의 교수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다.

(2) 유초하 교수의 경우

당국의 조사가 아직 행해진 바는 없지만 이제까지 보여준 공권력의 행사방법과 절차는 헌법이 정한 대학질서를 어지럽혔다는 문제점이 있다.

유초하 교수의 연령이나 경력, 평소 활동을 볼 때 긴급구속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불구하고 사민청이라는 과거 활동조직과 관련해서 인신구속을 시도한 것은 과잉된 공권력 표출임이 명백하다.

개강을 맞는 시점에서 구태여 인신구속의 수단을 선택하고자 한 것은 형사소송법상의 내용에도 위반되며 대학의 권위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학기중 교수에 대한 체포는 국회의원에 대한 회기중 구속을 자제시키고자 하는 것처럼 대단히 신중을 기해줄 것이 요청된다.

유초하 교수에 대한 학교당국의 성급한 직위해체조치 또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대학이 얼마나 교육부의 감독에 종속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실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정현백 교수 등에 대한 긴급구속

위에서 살펴본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이미 케케묵은 과거의 사건들을 오늘에 끌고와 조사하는 데에도 구속의 심리를 학기중 심야(방11시 30분)로 잡고 있다는 점에서 권력행사의 반인권성과 부당성이 발견된다. 동시에 연행후 무혐의로 귀가시킬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 모두가 당사자는 물론 학생들과 대학당국 모두를 우통한 차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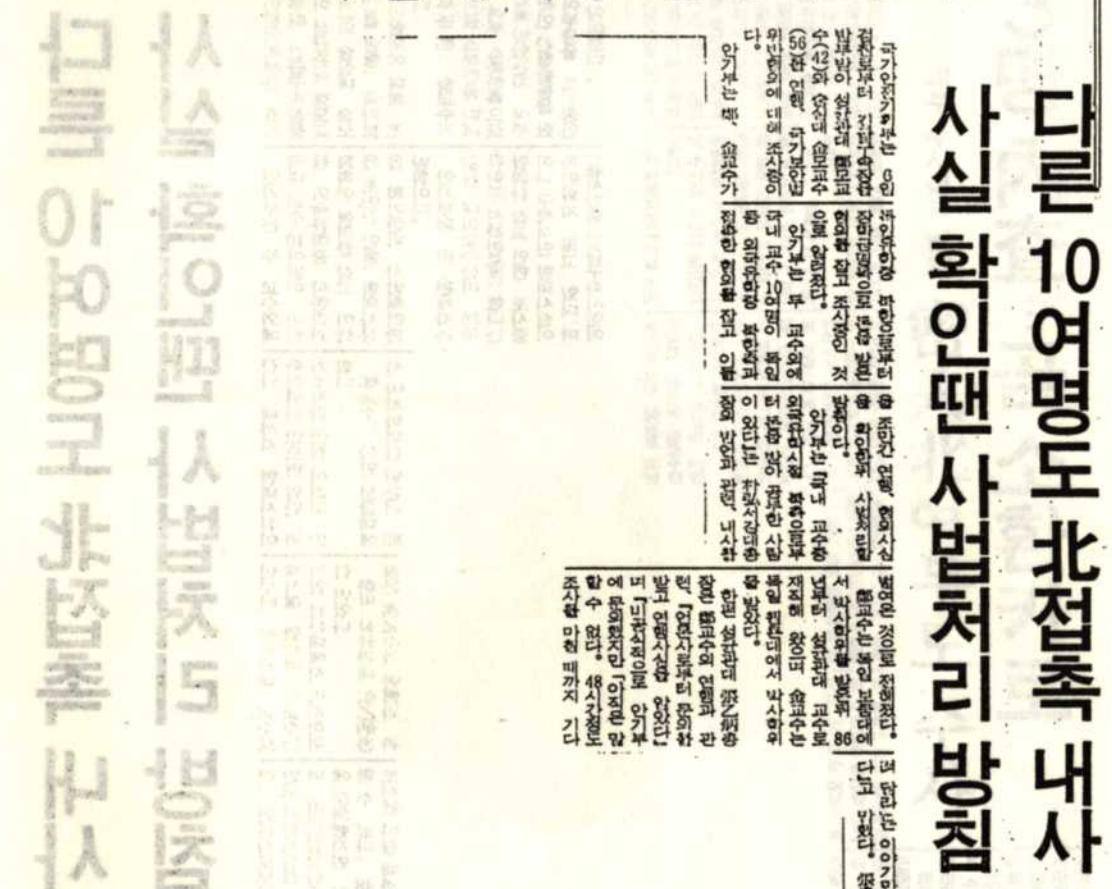
한 나라의 법치주의의 엄정한 집행을 위해서 안기부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권위가 존중될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들의 존재이유는 헌법과 법치주의의 안정에 있는 것이지 권력남용을 통한 헌법질서의 침해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은 문화국가를 지도원리로 하는 우리 헌법의 귀중한 이념과 질서라는 점이 특별히 기억될 것이 요청된다.

<언론보도>

* 동아일보 1994. 10. 6(금) 夕版

北韓장학금 교수 2명연행

安企部 “독일 유학중 돈받은 혐의”



다른 10여명도 北접촉 행사 사실 확인됐다 법처리 방침

新東

親北활동 혐의 教授 2명 연행

安企部 “訪北·간첩 활동여부 조사”

【기자 이정기/한국】 6일
경찰본부에 따르면 6일
법률부 외교부·한국인
교수 10명들이 빠지거나
교수 42명과 출입금지 명령
을 받은 바 있다. 일부
교수는(방북·간첩) 조사당
한국인 교육부장관 대행 조
사를 있다. 조사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10여명도 北접촉 내사 사실화되면서 사법처리 방침

【기자 이정기/한국】 6일
경찰본부에 따르면 6일
법률부 외교부·한국인
교수 10명들이 빠지거나
교수 42명과 출입금지 명령
을 받은 바 있다. 일부
교수는(방북·간첩) 조사당
한국인 교육부장관 대행 조
사를 있다. 조사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 이정기/한국】 6일
경찰본부에 따르면 6일
법률부 외교부·한국인
교수 10명들이 빠지거나
교수 42명과 출입금지 명령
을 받은 바 있다. 일부
교수는(방북·간첩) 조사당
한국인 교육부장관 대행 조
사를 있다. 조사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北韓장학금」 교수 2명 연행

안기부 獨유학때 수령 혐의

【기자 이정기/한국】 6일
경찰본부에 따르면 6일
법률부 외교부·한국인
교수 10명들이 빠지거나
교수 42명과 출입금지 명령
을 받은 바 있다. 일부
교수는(방북·간첩) 조사당
한국인 교육부장관 대행 조
사를 있다. 조사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3명 内查... 곧 소환키로 内사 수사체계 확보 密入北여부도 수사

【기자 이정기/한국】 6일
경찰본부에 따르면 6일
법률부 외교부·한국인
교수 10명들이 빠지거나
교수 42명과 출입금지 명령
을 받은 바 있다. 일부
교수는(방북·간첩) 조사당
한국인 교육부장관 대행 조
사를 있다. 조사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일보 1994. 10. 7(금)

국가안전기획부는 6일
大金瀨振교수 56·독
문화와 成均館大
교수(42·여·사학)는 56·독
보안법위반혐의로
독일 유학중 북한으로
금품을 봉기나 친북조직과
참여한 혐의를 조사중이
라고 밝혔다. 안기부 관계
자는 「연행된 교수들에
유학중 북한에서 돈을

있어 내사중이다」고
밝혔다. 이는 3~4명의
유학자들이 벌거벗은
체를 입고 활동한
게임에 조사하고
있다는 점이 있어 조
사가 독일에 있어
가고 있다. 대신 박
석과 함께 국립고
교수들은 독일에
6월 아침 서울을
떠나고 있다. 유학
중인 독일 유학자
들은 북한에 대한
관심을 높여온 학
교수들이다. 그들은
그동안 조선족이
같은 일본 유학
현장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金瀨振교수】

북한의 유학자들은
북한에 있는 유학자
들은 각각 협회에
가입하기로 합의하
면서 양국에 대
한 우호적인 협
회를 결성했다.
그들은 그동안
조선족으로 활동
한 학생들을 대상
으로 대상을 해외
로의 대상으로
유학자들을 확
대상으로 하는
방법을 찾았다.
【金瀨振교수】

安企部 獨
유학중 : 3
1
4
명도 内
查

北 자 금 받은 혐 의 두 教 授 연 행 조 사

* 한겨레신문 1994. 10. 7(금) 1면

교수2명 안기부연행

정현백·김홍진씨...석사과정 수료 1명도

“독일 유학 때 해외간첩단 연계여부 조사”

독일 유학을 마친 뒤 국내 대학
강단에서 활동하는 2명의 현직 교
수와 석사과정 수료자 등 3명이
국가안전기획부에 연행돼 국가보
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기부는 6일 “정현백(41·여·사
학과) 성균관대 교수와 김홍진(56·
독문학) 숭실대 교수를 이날 0시
께 각각 자택에서 연행해 해외 간
첩단 등과의 연계 여부를 조사중”
이라고 밝혔다.

안기부는 이에 앞서 5일 오후 9
시30분께 서울 성북구 안암동1가
241-1 자택에서 이태훈(31·베를린
자유대 석사과정 수료)씨를 연행
했다.

안기부는 또 6일 오후 6시께 수
사관 2명을 이씨의 집에 보내 이
씨의 부인 하이케(32·독일인)를
상대로 윤·김아무개씨와의 친분
여부와 남편 이씨의 북한왕래 여
부 등을 조사했다.

안기부는 앞으로 이를 3명 외에
5~6명을 더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백 교수는 지난 78~84년
독일 보훔대 유학시절 행적과 관
련해 북한 주민과의 접촉 및 금품
수수 등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고 안기부는 밝혔다.

안기부는 “이들 교수에게 뚜렷
한 혐의가 있다기보다 이를 확인
하기 위해 연행했으며 현재 조사

중이어서 내용을 밝힐 단계가 아
니다”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보훔대에 유학하면서
독일노동운동사 관련 논문으로 박
사 학위를 받고 86년부터 성균관
대 사학과에 재직했다.

김홍진 교수는 지난 72~81년
독일 필른대에 유학해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81년부터 숭실대
독문과에 재직하며 학생처장과 교
무처장 등 보직을 역임했다. 김 교
수는 특히 김영삼 대통령과 상도
동에 인접해 살며 조깅을 함께 하
기도 했다. 이태훈씨 역시 베를린
자유대에서 사회학 석사과정을 수
료한 뒤 지난 8월말 귀국한 것으
로 밝혀졌다.

오철우 기자

* 경향신문 1994. 10. 8(토) 23면



89년 평壤서 결혼식 네 차례 入北 교육 받아

獨 유학 夫婦 간첩 자수

<朴昭馨 기자>

연예교수 4명이 귀가조치

교장이 되어 7월 가족들과 함께 북한에 돌아온 4명의 교수들이 10일자로 직무를 이전하거나 학교를 떠나면서 귀국 조치를 당했다. 이들은 연예대학원 학생 4명과 함께 사내 대체교수로 학교를 이전하는 조치였다. 그들은 10일 오후 6시경 김포 국제공항에 도착해 11일 새벽 5시경 김포국제공항으로 돌아온다.

<朴昭馨 기자>

* 조선일보 1994. 10. 8(토) 1면

獨 유학 夫婦 간첩 자수

안기부 발표



◇ 韓炳勳씨

◇

◇朴昭馨씨

【기자회견 기록부】는 7일 「기자회견을 해온 韓炳勳 트대 교육학과 석사과정 수료」 부부가 최근 자수해 3월 북한 사회학부 5월 유학을 했다고 발표했다. 안기부는 韩씨 부부가 3차례에 걸쳐 입

독일유학 중 북한 간첩에 게 된 (한제훈 31·독일 원대 대학교수) 4차례에 걸쳐 입 철학과 석사과정 수료) 朴昭馨씨(30·독일 원대 학생) 등 4

포该怎么办? 4차례에 걸쳐 입 철학과 석사과정 수료) 朴昭馨씨(30·독일 원대 학생) 등 4

북, 북한의 지원을 받아

昭馨씨는 박사학위(30·독일 원대 학생) 등 4

북한 간첩으로 밟았다고

북한 간첩으로 밟았다고

북한 간첩으로 밟았다고

* 한국일보 1994. 10. 8(토) 29면

北開放화로 승「우회침투」 확인
「獨거점 간첩網」 실태와 문제점

북한은 유해송환 지식인 충
국제화 개방화 분위
기여 편승 제작물을 통한
우회 침투 철학을 구사하고
있음을 확인시킨 사건이
있다.

북한은 빠르게 경제 체
제를 나와 70년 8월
을 보석, 헤아리지 못하는
자금으로는 국내에 주체사
상 주체화 확산시키려
는 꾸준히 투자를 증가해
걸친 사업이 드러나고
있다.

북한 경제를 지원해
온가부 수사 결과 이번
사건의 혐의는 북한에 대
다.

북한은 유해송환 지식인 충
국제화 개방화 분위
기여 편승 제작물을 통한
우회 침투 철학을 구사하고
있음을 확인시킨 사건이
있다.

핵심金容武 70년대부터 暗躍

북한 경제를 지원해
온가부 수사 결과 이번
사건의 혐의는 북한에 대
다.

北 개방화로 승「우회침투」 확인

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앵기부는 5·6

일 교수 3명을 양행, 조

간호학과에게 생활비

를 지원해 앵기부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앵기부

에게 포스팅 10여 차례

임금을 지급해 놓았고, 북한은

국내에 주체사

상 주체화 확산시키려

는 꾸준히 투자를 증가해

걸친 사업이 드러나고

있다.

북한 경제를 지원해
온가부 수사 결과 이번
사건의 혐의는 북한에 대
다.

* 동아일보 1994. 10. 8(토)

獨유학 부부간첩 자수

安企部 「親北협의」 교수 3명 귀가

북한은 유해송환 지식인 충
국제화 개방화 분위
기여 편승 제작물을 통한
우회 침투 철학을 구사하고
있음을 확인시킨 사건이
있다.

북한 경제를 지원해
온가부 수사 결과 이번
사건의 혐의는 북한에 대
다.

국가안전기획부는 7일
과 앵기부가 지난달 자수
로 북한 학교에 金容武(57)에
원하게 포섭돼 뇌물과 국
내를 오가면서 간첩활동을
해온 韓炳烈(31·월류대월)
학과 석사과정수료) 차昭씨(30·월류대교육학
씨) 부는 월류대에 유학중이던
안기부에 따르면 韩씨부

는 7일 북한 대학원 학생을
해롭게 따라 독일류학생을
증정이란 한 간첩조직에
대해 수사를이라고 밝혔
다. 앵기부는 3차례
안기부에 따르면 韩씨부
는 월류대에 유학중이던
한국부부는 일주시 북한
과 함께 공작감
1만달러를 받았다고 앵기부는
이 사건과 관련
독일류학생 북한공
부상교육대 빙민
(30·여·충남대학원생)
李相禹씨(41·전도사) 등 2
명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로 구속했다.

한편 앵기부는 韩씨부부
조사과정에서 북한공작원
금과 접촉하는 혐의가
는 척결된다 韩모(42)
실대 송모(56) 서강대
모교수(48) 등
모두 6명을 6월 연행조
사행이나 鄭교수 등 4명
은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구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명예 국내 교수들의 유통
부부의 진술과 관련한 접
촉사실을 근거로 혐의
는 한 것에 대해서는 무리한
수사였다는 입장에 씻기
힘들다.

안기부에 알려졌던 成均
大 鄭慈相 교수(42·여)
서 대학교원회장 서기장
철학과 석좌인 金容武씨를
7·8차례 만난 점은 사
실이고 이전에서 유학생
북한으로의 접촉하는 점은
흔히 있는 일이다. 한
기부의 조치에 분노한다
고 말한다. 그는 또 「북한
교수들은 전문성을 높이 비교
하고 북한에선 어떤 돈
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

* 한겨레신문 1994. 10. 8(토) 사회15면

툭하면 “긴급 구속”

안기부 등 ‘강제연행 합법화 장치’로 악용
뚜렷한 혐의없이 마구남발 인권침해 심각

긴급구속 제도가 사법당국에 의해 자의적 인신구속을 위한 장치로 악용되고 있다.

안기부는 지난 5일 성균관대 정현백 교수, 서강대 윤여역 교수, 숭실대 김홍진 교수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한 뒤 혐의점이 없자 7일 오전 석방했다.

안기부는 자수간첩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혐의점이 없는데도 단지 독일 유학시절 북한 공작지도원과 이웃에 살았다는 등의 피상적 사실만으로 긴급구속장을 발부받았다. 안기부는 또 이들을 긴급구속하면서 긴급구속장 제시는 커녕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고지와 변호인 선임권 고지 등 의 법적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기부는 지난 5일 밤 긴급구속한 윤여역 교수에 대해서 북한 ‘사회문화부’ 소속 공작지도원이라는 김용무(57·· 대교상사 독일 지사

장)씨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윤 교수는 그러나 “김씨와 유학시절 이웃에 살게 돼 알고 지냈을 뿐 김씨가 친북인사인지 어쩐지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안기부도 조사 뒤 이런 나의 진술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안기부는 지난 5일 오후 정현백 교수를 연행하면서 긴급구속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30여분 동안 자택을 수색해 앨범 5권과 비밀록·수첩·여권 등 개인물을 압수해 갔다.

이날 안기부 수사관들은 연행사유를 물는 정 교수에게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지금은 없다”며 정 교수를 연행했다.

정 교수는 “7년간의 독일 유학 중에 김씨와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뚜렷한 혐의점도 없이 긴급구속한 것은 명예훼손은 물론, 심각한 인권침해”라면서 “특히 독일 개발원조처 장학금으로 유학했는데도 북한 장학금 운운한

작이 계속돼 왔다.

지난해 2월 김영삼 정부 출범

뒤 긴급구속된 사람은 모두 1만3

명으로 “이중 특히 검사가 사후영장을 청구하지도 않고 석방한 사람이 5백46명,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경우가 4백30명에 이르는 등 전체의 8%에 이르는 9백76

명에 대해 사후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천정배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 긴급구속장은 물론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긴급구속 뒤 48시간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윤 교수를 들어 고대생 프랑치 폭행치사사건, 전국연합 이창복 의장 사건, 남총련 홍대시위사건과 관련한 대

학생 무더기 긴급구속 사태 등에 서 보듯 사법당국이 임의동행 수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밤샘수사와 강제연행을 합법화하기 위한 정치로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국가안전기획부는 7일 독일 유학 중 북한 간첩에 포섭돼 네차례에 걸쳐 입북하는 등 간첩활동을 해온 유학생 부부 한병훈(31), 박

* 한겨레신문 1994. 10. 9(일) 사설

국가안전기획부, 아직도 멀었다

현직 대학교수 3명과 유학생 1명이 자정을 전후한 밤중에 들이닥친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에 의해 끌려간 것만으로도 그것은 놀라운 사건이었다. 안기부가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한 것 또한 놀랍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이들이 “해외간 철단파의 연계 여부”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사건의 전후를 들어봐도 참고인 조사에 불과한 사안을 두고, 설사 그 당시 확인해야 할 중대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더라도 도주의 우려도, 증거인멸의 위험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만큼의 긴박함도 없음이 명백한 대학교수들을 그런 식으로 거칠게 다룬 안기부의 행태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더욱이 독일 개발원조처 장학금으로 유학한 학자를 ‘김일성 장학금’ 운운한 신문보도까지 감안하면, 이번 사건이 명백한 명예훼손,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그야말로 중대사안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안기부가 사안의 중대성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까닭이다.

놀라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들이 독일 유학시절, 안기부가 ‘북한 공작지도원’이라고 발표한 사람과 이웃해 살았거나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그렇듯 난폭한 조처를 취했다는 데에 이르러서는 열린 입이 닫히지 않는다. 이를 뒤 발표된 수사결과는, 교수들은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귀가조치했고, 북한 공작지도원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하다 자수한 유학생 부부는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는 것이 전부였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다.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사태를 지켜보던 국민들로서는 무엇에 훌륭듯 어이없기도 하고, 안기부

* 서울신문 1994. 10. 8(토)



전족한 10여명 내查... 교수 3명은 귀가조치

獨 유학 夫婦간첩 자수

北공작원에 포섭돼 암약

朴弘종장「主思派」폭로에 가책

이들은 또 재독 간첩 김
유학을 끌고온
한기부는 이와 함께
술에

임북시키려 한 것으로
알렸다.

이들은 「차관 서장대 출장

관찰과 국제전화를

이 지난 몇 일 여의도를

공개통화에서 국내 주

파의 실체를 폭로했던

V 프로그램을 보고 앉았

그때 차수했다고 진술

한기부는 술과

한번 더 알렸다.

한기부는

이들은 「차관 서장대 출장

관찰과 국제전화를

이 지난 몇 일 여의도를

공개통화에서 국내 주

파의 실체를 폭로했던

V 프로그램을 보고 앉았

그때 차수했다고 진술

한번 더 알렸다.

한기부는

이들은 「차관 서장대 출장

관찰과 국제전화를

이 지난 몇 일 여의도를

공개통화에서 국내 주

파의 실체를 폭로했던

V 프로그램을 보고 앉았

그때 차수했다고 진술

한번 더 알렸다.

한기부는

이들은 「차관 서장대 출장

* 한겨레신문 1994. 10. 10 (월) 사회10면

성균관대 정현백 교수 “어찌면 이럴수가..”

안기부 악몽보다 언론매도에 오싹

한밤 느닷없는 연행뒤 고작 ‘~라 하더라’ 넘겨짚기 조사뿐
풀려난 아침 신문·방송에 ‘북한 장학금교수’... 사과도 없어

오철우 기자

“안기부에 연행된 32시간
간의 악몽보다도 ‘북한 장
학금 교수’라고 매도한 일
부 언론의 보도에 더 충격
을 받았습니다.”

지난 5일 자정 무렵, 10
여년 전 독일 유학시절의
행적에 대해 조사할 게 있
다는 안기부 수사관에 의해
남산 안기부 서울본부로
연행됐다가 7일 오전
풀려난 성균관대 사학과
정현백(41·여·사진) 교수
는 사흘이 지난 9일까지
자신이 당한 일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표정이
었다.

“북한 공작지도원이라는 김용무(57)씨와 독일에
서 몇 번 만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밤중에 연
행조사를 받고, 언론은 독일정부의 지원을 받는 장
학재단의 장학금으로 유학한 나를 ‘북한 장학금 교
수’라고 몰아붙였던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안기부 분실에 긴급구속된 뒤 정 교수는 20여시
간 동안 수사관의 신문을 받았다. 긴급구속장까지
발부받은 안기부가 정 교수를 다툽친 ‘증대한 혐의’
의 증거는 유학생 부부간첩 한병훈(31)씨와 박소형
(30·여)씨의 진술뿐이었다.

“이들 부부의 진술 가운데 김용무씨와 내가 친분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내용이 있더라는 거였죠. 몇
년도에 김씨와 만나는 것을 누가 봤다더라는 등의
넘겨짚기식 신문이 20여시간 계속된 조사의 전부였
습니다.”

7일 오전 풀려난 그는 정작 안기부 바깥의 분위

기에 더욱 오싹해졌다고
말했다.

“아침 방송뉴스에 내가
독일 유학 때 북한 장학금
을 받은 혐의로 안기부에
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
도가 나오더군요. 다른 일
부 조간신문도 ‘북한 장학
금’ 교수를 연행조사하고
있다는 제목을 큼지막하게
뽑았습니다. 어머니가 방
송사에 항의하자 방송사에
서는 안기부 자료를 보고
보도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더군요.”

정 교수는 안기부 조사
과정에서 북한 장학금과
관련해 질문조차 받지 않
았다고 말했다.

32시간의 안기부 조사, 그리고 언론의 무책임한
매카시즘적 보도를 겪으면서 정 교수는 그동안 막
연하게만 느껴왔던 우리 사회의 금박한 모습을 절
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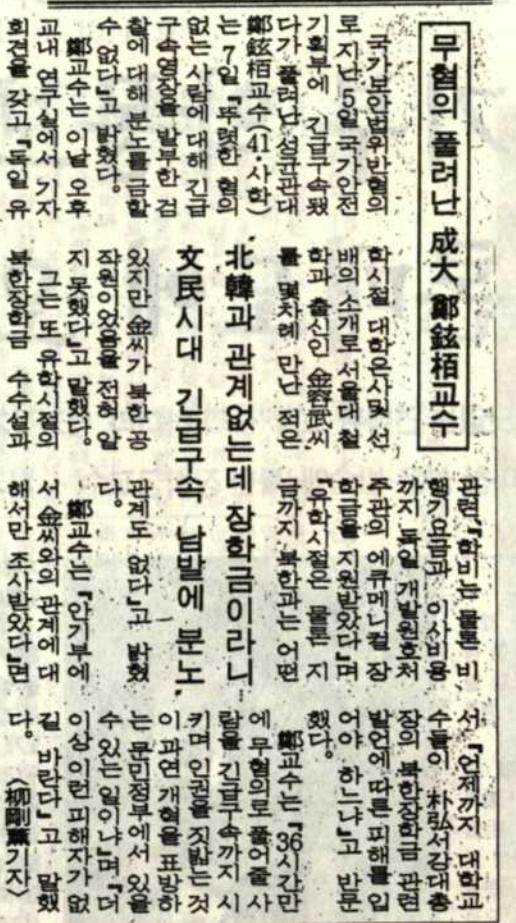
또 이런 모습이야말로 반세기 넘게 우리 사회에
깊게 뿐진 분단의 뿌리였다는 것도 다시 한번 느꼈
다고 그는 덧붙였다.

“현직 교수마저 수사기관의 첨보 하나만으로 어
느날 갑자기 연행해버리는 사회에서, 우리들이 얼
마나 인권 사각지대에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박홍 서강대 총장의 ‘주사파’ 발언 이후 거세진
반북이데올로기 앞에서 인권과 명예의 침해에 대한
문제의식이 회미해지고 있다고 지적한 정 교수는 “언
론을 포함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또렷한 문제의
식을 가져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 국민일보 1994. 10. 8(토)



* 성균관대신문 1994. 10. 10 (월)

정현백 교수 지난 6일 강제연행 32시간 조사... 무혐의로 풀려나

사회과 정현백교수가 지난 6일 경북 장학금 수령혐의를 받고 기안전기획부에 긴급연행되었다. 7일 오전 풀려난것으로 밝혀졌다. 안기부 발표에 따르면 승설대 흥진(독문)교수, 서강대 윤여덕 (사회)교수, 경북 유학생 이태훈 도 같은날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수를 포함한 이들

은 모두 독일유학을 했었으며 이들이 독일유학 중 알고 지냈던 북한 사회문화부 소속 공작지도원 김용무(57세)씨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와 직간접적으로 간첩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받은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하지만 연행되었던 4명 모두 김씨가 간첩인줄은 전혀 몰랐다는 진술을 함께 따랐다.

인권침해"라고 크게 반발했다. 특히 긴급구속영장은 장기 3년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사후구속 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전제로 발부해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안기부에서 그동안 악용해 문제시된 제도이다.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귀가조치했다고 안기부는 밝혔다. 이에 대해 정교수는 "나는 독일 개발원조처 장학금으로 유학했는데 언론이 북한장학금 운운한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행태를 비판하면서 "밤에 느닷없이 집에 들어와서 영장제시도 없이 가택수색을 하고 연행한 안기부의 처사는 심각한

* 성균관대신문 1994. 10. 10 (월)

인터뷰 — 강제연행후 풀려난 정현백 교수

"사건진상 규명위해 힘쓸터"

지난 5일 오후 밤 11 시 귀가중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긴급 구속되었던 사학과 정현백 교수가 7일 오전 무혐의로 풀려났다. 안기부는 "독일 유학중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친북 조직에 참여한 용의점을 찾고 있다"고 긴급 구속 이유를 밝혔지만 연행 하루만에 "혐의사실이 없다"고 발표 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긴급구속장은 '3년형의 금고형을 받았거나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는 중범죄자에게 발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뚜렷한 혐의 없이 32시간 조사를 받았던 정교수를 만나 이번 사건과 관련입장을 들어보았다.

사전영장제시도 없이 안기부에 연행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 정부가 들어어서면서 생겼다는 긴급구속장은 전에 있었었던 '입의동행'보다 한층 고도화된 방법으로 강제연행을 합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참고인 진술 형태로도 충분한 일에 대해 '긴급구속'이라는 명분으로 사람을 마구잡이식으로 잡아들이는 것은 분명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대부분 7일자 머리기사로, 마치 교수님이 북한장학금으로 공부한 것처럼 보도했는데. 나와서 일간지 보도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제가 북한 장학금을 받고 교수가 된 것처럼 못박

았던데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공작지도원이라는 김용무씨를 다른 사람과 몇번 만난적은 있지만 7년간 유학중 독일 개발원조처가 재정의 결반이상을 지원하는 에큐메니컬 장학금으로 공부했고 심지어 본국으로 돌아올때는 비행기표와 이사비용까지

제공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느낀점이 있다면,

무책임한 언론과 정부의 보도에 대한 인식없이 "무슨일을 했으니까 잡아가지"라는 식의 시선이 아직까지 주위에 팽배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분단이라는 반공이념이 온연중에 깊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돼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가권력이라는 것이 한 교수의 인권을 얼마나 일방적으로 짓밟을 수 있는가도 알게되었구요.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총장님 이하 여러분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민교협과 민변측에서 정교수님 '긴급구속' 관련 공식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예정이신지.

일릴 수 있는 한 최대한 사건의 진상을 알리려고 합니다. 저는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언제 어떤 사람이 또 이런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언론사에 정보보도를 요구할 계획이며 가능하다면 국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도 벌여 나갈 생각입니다.

(박수원기자)

소위 「북한장학금 교수」사건 보도

'북한장학금 교수 2명 연행' (경향) '간첩단 연계혐의 교수 등 수사' (세계) '친북활동 혐의 교수 2명 연행' (동아) '북한장학금 교수 등 연행'

성균관대 정현백 교수 (사학과) 승선태 김홍진 교수 (독문과)의 안기부 연행 사실을 1면 또는 사회면 머리기사로 다루면서 단신문제목이다.

안기부와 검찰은 지난 6일 오전 검찰출입 기자들이 이 사실을 듣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공사건이다" "박홍총장 발언과 관련이 있다"고 단편적인 쓰는데 치중했다.

제목의 경우 기사내용을 훨씬 앞질려 갔다. '북장학금' '친북' 운운의 제목은 독자나 시청자들로 하여금 "박홍총장의 말이 사실이구나"하는 느낌을 갖

사실확인 없이 자극적 표현 남발

「박홍발언」과 연계... 제목선 한술더떠

방송 역시 '북장학금 교수 조사'라는 제목을 달아 주요기사로 처리했다.

이들 두교수의 안기부 연행 사실에 대한 보도는 우리 언론의 이념문제에 대한 경직된 자세와 안기부라는 성역에 대한 취재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결국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귀가조치된 두교수에 대해 우리 언론은 이들 두교수를 마치 독일 유학시절 북한 장학금을 받아 공부한 것처럼 보도했다.

박홍서강대총장의 "북한 장학금 받고 교수된 사람도 있다"는 발언과 두교수의 연행 사실을 서슴없이 연결시키기도 했다.

단지 두교수가 안기부에 연행됐다는 사실외에는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은 '북한 장학금'과 두교수를 성급하게 연결시키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

문제는 이같은 보도가 '단순 실수'가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흔적이 짙다는 점이다.



또 한 안기부 관계자는 "뜻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곧 귀가조치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안기부는 각 언론 사에 협조요청 형식으로 7일 공식발표를 할때까지 '보도자 제'를 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6일 저녁 신문 초판에 '북장학금 교수'라는 내용으로 1면 머리기사 등으로 크게 보도되자 "언론이 너무 앞서간다. 사실과 틀리다"는 해명을 하기도 했다.

결국 이번 보도는 확인취재가 힘들다는 안기부의 특성을 편리하게 활용, "그렇게 됐으면"하는 언론의 네거티브 '희망사항'을 한껏 표출한 사건이었다. 공인인 두교수의 명예나 이로 인해 국민들이 느낄 충격은 처음부터 안중에 없었던 것이다.

'문민정부' 아래 짓밟힌 인권

"공권력과 언론의 탄압구조... 슬픈 분단의식"

(한겨레21) 창간 때부터 논단의 필진으로 참여해온 정현백 (성균관대·사학과) 교수를 안기부가 지난 5일 갑자기 연행했다.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고 하룻밤에 풀려난 정 교수의 글을 받아 신는다. 이 기고에서 정 교수는 우리 사회에 인권을 무참히 침해하는 거대한 메커니즘이 존재하며, 그것은 바로 공권력과 언론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와 함께 우리 개개인의 마음 속에 남아 있는 분단의식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느꼈다고 밝혔다.



정현백 교수

10 월5일 밤 11시 학교에서 돌아오던 나를 집 앞에서 기다리는 안기부 수사관들이 있었다. 30분간의 가택 수색 뒤 나는 11시30분경 연행됐다. 수사관들은 새 정부 이후 안기부는 임의동행을 하지 않으며, 그래서 긴급구속장을 가지고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의 부친이 보여줄 것을 요청하자 한 책임자는 단지 신분증만을 내밀었다. 안기부 본실에 도착하였다가, 다시 나는 새벽 1시경 증부서에 가서 '인치' (안기부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장소가 될 수 없어 서류상으로만 경찰서에서 신병을 맡고 있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를 받았다. 부끄럽게도 법률에 무지했던 나는 이런 용어들을 처음 들을 수 있었다.

고통스러웠던 17년 전 결백 입증

그 후 32시간 동안 나는 피의자로서 조사받았다. 핵심사항은 20년간 암약한 북한의 고급공작원인 김용무와 언제, 어디에서 만났으며,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를 밝히라는 것이었다. 일순간 나는 당황하였다. 김용무 선생을 나는 1977년 10월 나의 은사 두분 (당시 서울대 인문대 교수)을 통해 소개받았다. 당시 국립대학 교원으로 공무원 신분이었던 그분들은 김용무 선생이 어떤 반체제적 정치활동에도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자유롭게 만났고, 나에게도 인사를 시킨 것

이었다. 그 후 나는 김 선생을 여러 교수들과 함께 어울려 몇번 만났고, 홀로 만난 것은 두세번 정도였다. 17년이라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세세한 일들을 기억해내고 그를 통해 나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이 일 외에도 나의 지난 행적들이 32시간 동안의 검색과정을 거쳐야 했다.

10월7일 새벽 6시30분 나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갈구하였던 휴식과 잠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이었다. 10월6일자 일간지들은 일면 머리기사로 '북한장학금 교수 2명 연행'이라는 제목 아래 교수들이 긴급구속됐다고 다루고 있었다. 더욱 가관이었던 것은 6일 저녁 한 방송사의 텔레비전뉴스였던 모양이다.

연행된 두 교수가 재직하는 학교 건물이 계획화면에 나오면서, 그들이 만든 '북한장학금'을 받은 교수 들에 대해 경악하는 보도로 일관했던 모양이었다. 전국이 이 뉴스로 들끓었다. 나의 모친은 "집을 팔아서라도 재판을 하겠다"고 펄펄 뛰고 있었다. 나의 모친과 다른 교수 가족들이 바로 문제가 된 방송사에 전화로 항의를 하였지만, 그들은 '안기부가 보내준 자료대로 내보냈을 뿐이다'라는 말만 반복하였다.

그리고 7일 저녁 뉴스는 '세 교수는 일단 귀가 조치하였다'고만 할 뿐, 우리들이 무혐의 처리되었다고 보도하거나, 자신들의 보도를 정정하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아침부터 밤까지 연구실에서 책을 보고, 학생을 가르치고, 매달 들어오는 월급에 황송해하며 살아가던 평범한 대학교수인 나는 하루 아침에 '북한장학금'을 받은 '공작원'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말았다. 백주 대낮에 '문민정부' 아래에서 나의 인권은 이렇게 짓밟혔다.

이제 없는 돈을 모아서, 1~2년에 한번 세로운 자료와 사료를 수집하기 위해 다니던 독일로의 연구여행도 망설여지게 되었다.

왜곡된 보도, 정정 않는 부도덕성

이 며칠간의 경험은 이 땅에서, 한 교수로서의 삶이 그리 안정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했다. 우선 나는 '긴급구속장'이라는 제도 아래 침해되는 인권을 말하고 싶다.

사실 내 경우에는 긴급구속장도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후에 내가 전해들은 지식은 '긴급구속' 제도는 3년 이상의 금고형에 해당하는,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게 발부될 수 있는 것 이었다. 전체 과정을 보면 나는 참고인 진술 정도의 조사를 받았다. 긴급구속장을 발부에 한 사람을 데려올 때는 그 사

람의 범죄를 입증할 만한 최소한의 증빙자료는 있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긴급구속장이라는 생소한 용어는 언론으로 하여금 긴급구속이라 는 보도를 내도록 하였다. 과거의 임의연행이면 죽했을 일을 구속된 것으로 취급받도록 했다. 한 제도의 개선은 그것이 내용적으로 체워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입증하는 전형적인 사례였다.

그 다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북한 장학금' 운운 하는 이야기다. 나는 안기부 조사과 정에서 북한 장학금에 대한 질문은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 나는 1970년 독일 에큐메니칼 장학 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1977년 10월에 출국하였다. 독일개발원조차가 그 재정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에큐메니칼 재단은 왕복 항공권, 체류기간 동안의 생활비, 심지어는 귀국 때의 이사비용과 나의 박사논문 출판비용까지도 부담했다. 북한 장학금 운운하는 이야기는 도대체 나에게는 해당될 수조차 없는 일이었다.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1면 머리기사를 뽑고, 또 자신들의 왜곡된 보도에 대해 정정할 줄도 모르는 언론의 부도덕성에 나는 몸을 떨었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의 침해는 공권력에 의해서 만이 아니라 언론에 의해서도 자행되고 있다.

얼마나 많은 속죄양을 바라는가

뿐만 아니라 교수들은 '북한 장학금을 받은 교수가 있다'는 박홍 총장의 근거없는 발언에 의해 지속적으로 회생당하고 있다. 여기저기의 언론 보도에서 안기부가 10여명을 또는 30여명의 교수를 내사중이라는 이야기가 근거없이 나돌고 있다. 언제까지 우리 교수들의 인권은 짓밟혀야 하고, 또 얼마나 많은 속죄양이 생겨날 것인가?

독일에서 장학금을 받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한 일부 교수나 강사들은 또 얼마나 불안에 빠졌을까? 이제 이 유태인 놀음을 중단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나는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척결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권력이나 언론의 횡포에 못지 않게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이 사건과 나를 바라보는 주위의 시각이다. 한 교수의 인권이 공권력과 언론에 의해 일방적으로 침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악점이라도 있으니 잡혀갔겠지', 아니면 '그런 학교에 어떻게 중산층 학부모들이 학생을 보내겠는가' 하는 주위의 용성거림이다. 분단의식을 강요하는 공권력과 언론에 못지 않게 심각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분단이다. 이 분단의식 아래 지식인조차 공권력과 언론이 만들어낸 이 메커니즘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주변에는 나를 걱정하는 많은 이들의 따스한 격려가 있고, 나는 그로부터 큰 힘을 얻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지하고 싶은 것은 이번 사건은 나에게 큰 타격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언론의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나는 앞으로 오랫동안 '북한 장학금을 받은 교수'라는 낙인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 그것은 내 활동공간의 위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염려하는 것은 나 자신의 문제가 아니다. 법적으로 하자를 삼을 건더기가 없는 지식인을 움아매는 한 방법으로 공권력과 매스컴이 주도하는 이런 합작품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반복될 것이다.